

『미국 뉴저지 주(州), PFAS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요건 및 금지 사항』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7.

TBT 통보 여부	미통보	HS Code	28, 29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907,739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작성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붙임. 규제 참고자료	6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뉴저지 주(州) 하원은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을 함유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제정안을 발표함**

* 식품 포장재, 코팅된 조리도구, 방수용품, 접착제, 종이, 페인트 등 다양한 제품에 흔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면서 환경 오염 및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 동 제정안 발효 시, 기존 뉴저지 주(州) 법률 제13편이 이에 따라 개정됨

□ (규제요지) 동 제정안에서는 ①적용범위, ②PFAS 함유 제품의 판매 금지, ③PFAS 함유 제품의 표시 의무화, ④조항 위반 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TBT 통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통보 	통보일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5일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PFAS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요건 및 금지 사항, 조례안 5600, 2025년 5월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for Sale and Distribution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PFAS, Assembly Bill 5600, May 2025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저지 주 하원 New Jersey Assembly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FAS 함유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준수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 초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의 시행 즉시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별 상이(본문 [표 2], [표 3], [표 4] 참고)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함유된 제품 Products containing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 2~3페이지 참고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2,907,739	HS Code	28, 29

□ (제정 세부내용)

- (적용범위) 동 제정안은 뉴저지 주(州) 내에서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제품*의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목적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됨
 - * 제품 또는 구성 요소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PFAS 분해 부산물도 포함됨
 - 단, 연방 또는 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통신 인프라 장비, 중고 제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표 1] 동 제정안(적용범위)

개정 법률 제13편을 보완하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관한 법률

(:)

“대상 제품(Covered product)”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 조립, 포장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준비된 품목으로, 개인용 또는 주거용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대상 제품”에는 다음 품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 (1) 연방 또는 주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연방 식품의약국 또는 미국 농무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된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 또는 진단기기이거나,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21 U.S.C. s.301 et seq)에 따라 규제를 받는 제품
 - (b) 연방 식품의약국 또는 미국 농무부에서 승인 또는 허가하거나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21 U.S.C. s.301 et seq.)의 범위에 속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 또는 진단기기용 포장 또는 식품용 비필프 기반 포장
 - (c)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7 U.S.C. s.136 et seq.)에 따라 등록되거나 사용이 승인된 제품
 - (d) 미국 환경보호청의 중요 신규 대체물 정책(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SNAP)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 용도에서 허용되는 대체 물질로 규칙제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정된 물질 또는 “미국 혁신제조(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IM)법”(42 U.S.C. s.7675)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체 물질
 - (e) 연방 항공청 또는 국방부, 또는 양 기관 모두에 의해 인증되거나 규제된 완제품으로서, 해당 기관이 인증하거나 규제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규제 또는 인증을 받은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자재 및 공정이 포함된다.
- (2) 중합체의 주 골격이 퍼플루오르화 또는 폴리플루오르화된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골격이거나, 퍼플루오르화 폴리에테르 골격인 고분자 물질
- (3) 연방법 또는 주법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품목
- (4)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제공된 중고 제품

- (5) 전지형차량, 오토바이, 사이드바이사이드차량, 농기계, 건설장비 및 개인용 보조 이동 장치와 같은 도로용 및 비도로용 차량을 포함한 동력 차량
- (6) 제품 내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전자 부품
- (7) 냉난방, 환기, 공조 및 냉장 장비와 그 부품 및 유지보수 필요 물품
- (8) 전자 부품의 침지 냉각에 사용하는 유전 열전달 유체
- (9) 방송, 케이블, 위성, 무선, 유선 네트워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인프라, 장치 및 기타 장비
- (10) 전기 생산 및 배전에 사용되는 제품
- (11) 개인 보호 장비

○ **(PFAS 함유 제품의 판매 금지)** 동 제정안에 따라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은 발효일로부터 3년의 준수 기한이 부여되며, 이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를 위한 유통이 금지됨

[표 2] PFAS 함유 제품의 적용시점 및 금지사항

항목	적용시점	금지사항
의류, 카펫, 직물 처리제, 화장품, 식품 포장, 어린이용 제품, 여성용 위생용품, 스키 왁스, 텍스타일 제품류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판매, 판매 제안, 판매용 유통 금지

- **(PFAS 함유 제품의 표시 의무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고습 환경용 기능성 의류와 조리기구는 표시 요건에 대한 준수 기한이 있으며, 해당 기한 이후 표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를 위한 유통이 금지됨
 - 고습 환경용 기능성 의류는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PFAS 함유 표시를 읽기 쉽고 식별 가능한 라벨로 부착하여야 하며, 5년 후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판매 금지됨

[표 3] 고습 환경용 기능성 의류의 적용시점 및 요구·금지사항

항목	적용시점	요구사항 및 금지사항
고습 환경용 아웃도어 의류 (신규·미사용 제품, 온라인 판매 포함)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PFAS로 제조됨'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판매, 판매 제안, 판매용 유통 금지
	발효일로부터 5년 후부터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판매 제안, 판매용 유통 전면 금지

- 조리기구는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표 4]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PFAS가 포함된 경우 'PFAS 없음' 이라는 문구의 사용이 금지됨
- 단, 조리기구 자체에 라벨을 부착할 공간이 없으며, 포장이나 태그 등 외부에

표시할 수단 또한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요건에서 면제됨

[표 4] 조리기구의 적용시점 및 요구·금지사항

항목	적용시점	요구사항 및 금지사항
조리기구 (온라인 판매 포함)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p>a. 제품 라벨에 “이 제품에는 PF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표기하여야 함</p> <p>b. 제품 라벨에 “제품의 PFA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라는 문구와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p> <p>(1) PFAS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의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p> <p>(2) (1)에 따라 설정된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정사각형 배열로 구성된 QR 코드 또는 기타 기계 판독 코드</p> <p>c. 제품 라벨은 요구되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표시되어야 함</p> <p>d.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정해진 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조리기구를 뉴저지 주 내에서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할 수 없음</p>

- (조항 위반 시 처벌) 동 제정안에 따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0,000달러의 민사 과징금 또는 최대 2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하루 단위로 반복 부과됨

(관련 법령)

- New Jersey Revised Statutes, Title 13¹⁾

1) <https://lis.njleg.state.nj.us/nxt/gateway.dll?f=templates&fn=default.htm&vid=Publish:10.1048/Enu>

(규제원문 출처)

- 미국 뉴저지 주(州) 관보

- 원문링크: https://pub.njleg.state.nj.us/Bills/2024/A6000/5600_I1.PDF